

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의안 번호	31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 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안이유

- 현행 "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"를 "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 위탁에관한조례"로 개정하여 행정사무를 민간(공공)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화를 도모코자 함

주요골자

- 현행 "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"를 "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 위탁에관한조례"로 개정하고
- 나 이동진료 사무업무등 4개과 10개 단위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

근거법령

- 전염병예방법 (따로붙임)
- 청소년기본법 (따로붙임)
-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(따로붙임)
-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, 같은법 시행령 (따로붙임)
- 기능장려법, 같은법 시행령 (따로붙임)
- 에너지이용합리화법, 같은법 시행령 (따로붙임)

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의 제명을 “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” 로 한다.

제1조중 “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소속 시장.군수, 출장소장 및 소방서장에게 위임함으로써” 를 “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시장.군수, 출장소장,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사무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및 법인 단체에 위탁할 사무를 정함으로써” 로 한다.

제2조중 제목명 “권한의 위임 사항” 을 “권한의 위임 및 위탁사항” 으로 하고 내용중 별표를 “별표1” 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사무는 “별표2” 와 같다.

제4조중 “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자” 를 “위임.위탁된 사항은 위임.위탁받은자” 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준용) 권한의 위임.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중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